

공 시 송 달

- 재산압류 예고 -

- 공고기간 : 2023. 5. 15. ~ 5. 29.(15일간)
- 서류의명칭 : 체납 상·하수도요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처분의 사전통지
- 공고내용

체납자현황		서류의 명칭 및 내용	급수전 주소	압류할 재산	체납 기간	체납액(원)			
주소	성명					계	상수도 사용료	하수도 사용료	물이용 부담금
울산광역시 중구 다운4길 18 (다운동)	황*순	명 칭: 체납 상·하수도 요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 용: 재산압류예고(토지)	울산광역시 중구 다운4길 18 (다운동)	(대) 다운동 762-3	2022. 11. ~2023. 4.	429,820	139,190	275,790	14,840

위 재산압류 예고문을 소유자의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함을 공고하오니, 공고기간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 및 「울산광역시 수도요금 등 과징사무 처리 규정」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(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-12(교동), 052-229-5663)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.

2023. 5. 15.

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

